

#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

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새싹들이 돋아나는 희망찬 계절에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

다름이 아니옵고 자녀 학생 졸업으로 결원이 발생한 학교운영위원회 **학부모위원 1명**을 **보궐선거**를 통해 선출할 계획입니다.

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거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.

- ◇ **공고일 및 장소**: 2020. 3. 9.(월) 우리학교 홈페이지
- ◇ **후보자 등록기간**: 2020. 3. 9.(월) ~ 3. 11.(수) (근무시간 내)
- ◇ **후보자 등록장소**: 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- ◇ **입후보 자격**
  -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**공무원 결격사유**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##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● **제33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**겸할 수 없음**

◇ **선거방법** :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및 우편투표

- ① 투표용지 회수(가정통신문, 우편투표의 경우): 2020. 3. 12.(목) ~ 3. 17.(화)
- ② 투표일시 : 2020. 3. 18.(수) 10:00
- ③ 투표장소: 중학교 음악실

2020년 3월 10일

**안성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**